

2026년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·육성 사업 추진계획



2026년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·육성 사업 추진계획

I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6. 4. ~ 12.
- 추진목적 : 우리 지역에 맞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화가 가능한 품종중
道 승인을 받은 품목(*2023년 공주시 블루베리 道 승인)
- 총사업비 : 20,000천원(도비 3,000^{15%} / 시비 7,000^{35%} / 자담 10,000^{50%})
- 사업대상: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
법률」 제2조,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블루베리
재배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

※ 공주시에 거주하며 타시군 농지 소유시 지원가능

- 사업내용 : 묘목 구입비, 비가림 재배시설 및 부속시설, 작물재배 및
출하 관련 편의장비 등 맞춤형 지원
- 지원기준 ※ 농가 당 총 사업비 기준 최대 5,000천원 지원
 - 개인별 사업량은 0.1ha ~ 0.3ha 기준
 - 면적증감과 관계있는 시설·자재는 면적에 비례하여 산출
 - * 단, 농가가 지원내역과 별개로 추가 시설자재를 투입하는 것은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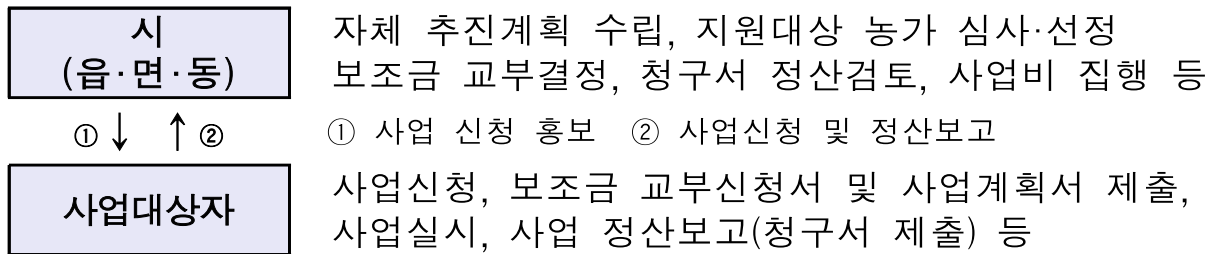
II.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

지원내용	지 원 기 준	기준단가
○ 비가림 재배시설	○ 지역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○ 기존 고시된 내재해형 설계도 활용 또는 자체 설계 후 시공 * 설계비용 사업 미포함	○ 43천원/㎡ * 비가림시설, 자동개폐기, 관수관비, 환풍시설, 방풍망 등 설치
○ 방조망, 방풍망, 방충망 등	○ 비가림재배시설 지원면적에 맞게 설치 * 시설면적 초과 지원 불가	
○ 덕시설	○ 비가림재배시설 지원면적에 맞게 설치 ○ 재배 작물에 적합한 덕시설 설치 * 시설면적 초과 지원 불가	○ 4천원/㎡
○ 묘 목	○ 자체 보증이 가능한 묘목	○블루베리 10천원/주/33㎡
○ 기타장비	○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의 기종 및 모델 참고	○실 단가 적용 *비교 견적 필수

* 기반조성 비용, 난방기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(자부담으로 설치)

Ⅲ. 세부 추진계획

가. 사업시행 절차



나. 신청 및 홍보

- 신청기간: ~ 5. 6.
- 신청장소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제출서류: 사업신청서(별첨 서류 참고), 견적서 등
- 홍 보: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동 홍보

다. 대상자 및 사업량 선정

- 지원사업 희망농가는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서(서식1) 제출
-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경영체등록 여부, 사업예정지,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시에 대상자 추천
- 시장은 『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』 원예식품 구조개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대상자 및 우선순위를 확정
 - * 사업대상 예비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
 - * 포기자는 별도 관리,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(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경우 제외)

지원 우선순위

- ① 최근 2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적은 농가
- ② 친환경·GAP 등 인증 농업인 ③ 정부기관 표창 경력이 있는 농업인

- 대상부지가 사업대상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(임차) 대상자로 선정 지양
 - 다년생 작물의 경우 10년 이상 수확 가능, 비가림시설도 10년 이상 관리·사용으로 토지소유주와의 분쟁 등의 문제 발생
- 부적격자 및 중복 지원자 선정 제외

라. 사업추진 요령

【공통사항】

- 시장(읍·면·동장)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 방지 등을 위해 견적서, 원가계산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적용하여,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 확보
-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(읍·면·동)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(서식2) 제출

【묘목 선택 및 구입】

- 묘목 식재 지역의 기후·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품종을 선정
- 「종자관리요강」에 따른 규격묘 기준에 적합한 묘목으로 공급
- 무병묘가 개발된 품종의 경우, 무병묘 품종이 아닌 경우 지원 제한

【생산시설(비가림 시설) 및 부속시설】

- 비가림시설은 「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(농식품부 고시)」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
 - “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(농식품부 고시)”을 견딜 수 있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설치
 - * 내재해형 시설규격,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은 사업추진 시 최신 고시본 적용
- 유자격자를 통한 설계로 구조계산 전문업체를 통해 지역 및 작물특성에 적합하며 실용성이 높은 시설이고, 안전 기준에 적합한 온실 설치
 - * 유자격자: 건설산업기본법의 “건설사업관리”를 통한 설계가 가능한 업체 또는 업자
- 시설 골조(서까래, 지주, 중방 등) 자재는 KSD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(SPVHS, SPVHS-AZ)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(단,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 3760에 준용)를 사용

*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: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

(강관종류)	(KS마크규격)	(직경*두께)	(제조사)
SPVHS	KSD 3760	31.8*1.5	○○○○

- 비가림시설 시공은 건설업(금속구조물·창호·온실공사업) 등록 업체를 통해서만 시공이 가능 *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
- 자동화비닐온실(연동)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중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
- 비가림재배시설에 필요한 부속시설(방조망, 방풍망, 방제시설 등)은 원활한 설치 및 AS를 위해 재배시설 시공업체에서 일괄 시공
- 기타 자재는 KS마크 인증제품 사용
- 필요한 경우, 사업대상자가 시공업체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,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추진
 - 보조금의 부정한 집행과 유용 방지를 위해 지방계약법에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의 경우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
 -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(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)
-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이 선정한 감리 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
- 설치되는 비가림재배시설의 유형 변경 등 사업 단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충분한 검토 후 사업 단가 조정

【기타장비】

- 장비 공급은 사용시기를 감안, 조기에 공급하여 적기 활용 도모
- 기계·장비는 ‘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목록집’ 등록제품 공급
- 지역 사후봉사(A/S) 지정업소에서 공급하는 농기계로 지원
- 지역 사후봉사(A/S) 지정업소가 ‘농업기계공급자(사후관리 업소) 명단’에 없는 경우, 또는 「농업기계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」의 이행계약 지역에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(공급)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「사후관리보증서」를 발급받아 직접 공급
- 기계·장비의 사업은 시장·군수의 철저한 검수 및 확인 필수


마. 사업관리 및 지도·감독

- 시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 점검 결과,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미추진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한
- 본 사업으로 설치·공급된 시설물, 기계·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」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 적용(서식 4, 관리카드 작성 관리)

중요재산	사후관리기준·기간		처분제한기준
▪ 부동산(비닐하우스 골조, 품종갱신 묘목 등)	등기일 (준공일)	10년	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 금지
▪ 부동산 증물 (고정식 기계, 설비 등)	준공일	7년	
▪ 주요 기계·장비	구입일	5년	

*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도지사(시장) 승인 후 처리

- 충청남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
 - (대상) 도비 5천만원 이상 포함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보조사업자
 - (종류) 공사표지판, 시설표지판, 운영표지판, 홍보(인쇄)물 표시 등
 - (내용) 보조금 지원년도, 지원기관, 주요 보조사업 내용 등
 - (형식) '표지판 디자인 안'을 참고하여 설치,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 특성에 맞게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(표시) 가능
 - 공사표지판 :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
 - 시설표지판 :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
 - 운영표지판 :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
- 표지판 관리점검 : 사업부서 연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 점검
 - 점검내용 : 표지판 설치여부, 규격 준수 여부, 위치 등 확인
 -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, 철거·훼손·용도변경·분실 시 즉시 원상회복
- 표지판 형식(충청남도 표지판 설치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)

시설 표지판(예시)		설치 개요
 - 보조사업명 - 이 시설은 충청남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었습니다.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설치대상) 사업별로 연간 도비 5천만원이상 지원받은 민간보조사업자 ■ (규격) 가로 35cm, 세로 25cm 이상 ■ (재질)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+엠브렘 주석주물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강화유리 물질
사업명		
총사업비	백만원(국비, 도비, 시군비, 기타)	
지원기간	20 . . . ~20 . . .	

바. 보조금 집행 및 정산

- 시장(읍·면·동)은 사업이 완료된 시설·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·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
 -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
-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하며, 자금 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
 -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
-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
- 사업비 집행·정산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, 「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반영
 - *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 확인 등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
 - *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(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)

IV. 행정사항

- 신청 접수(읍·면·동): 2026. 5. 6.한
 - * <서식 1>, <서식 1-1>, 심사표, 첨부서류 등
- 사업 접수 결과 제출(읍·면·동→시): 2026. 5. 8.한
- 대상자 선정: 2026. 5.
- 보조금 교부결정: 2026. 5. ~ 6.
- 보조금 청구 및 사업비 집행: 2026. 6. ~ 12.

2026년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·육성 지원사업 신청서

신 청 자	주 소						
	성 명 (조직명)				생년월일		
	조직일 경우 참가농가수				연락처 (대표자)		
재배현황	재배면적	m ²			생산량	톤	
	친환경 및 GAP재배	m ²	인증구분			인증번호	
	수출실적	톤(2024년		톤, 2025년	톤)		
	공동출하	톤(○○농협		톤, ○○법인	톤)		
신청내용	사업신청지						
	구 분	비가림 재배시설	방조망	방충망	덕시설	묘목	장비 ()
	사업량	m ²	m ²	m ²	m ²	주	대
	금액(천원)						
	<p>상기와 같이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·육성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본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6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자 인</p>						
<p>공 주 시 장 귀하</p>							

- ※ 1)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서류 :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2)토지대장 3)견적서
 3) 친환경·GAP 인증관련 서류(친환경·GAP 인증농가에 한함)
 4) 정부기관 표창 실적(해당시) 5) 사업품목 관련 교육 수료 실적

신소득 유망작물 발굴·육성 지원사업 변경신청서

일반현황

농가명		생년월일	(만 세)	
주소			영농경력	년
전화번호		농가소득	백만원	

변경신청 내용

구분	세부사업내용	사업량 ()	재원별(천원)				비고
			계	도비	시비	자담	
당초							
변경							

변경사유(상세히 작성)

-
-

위와 같이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·육성사업을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. .

신청자 (서명 또는 인)

공주시장 귀하

*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시 시(읍·면·동)에 변경신청서 제출

서식 4

신소득 유망작물 발굴·육성 지원사업 농가 관리카드

1. 사업추진 현황

농가명				지원연도		
주소				연락처		
사업장 소재지						
사업추진 내역	세부사업내용	사업량 (㎡,대,주)	사업비(천원)			
			합계	도비	시비	자담
	합계					

2. 사업추진 실적

구분	재배현황(㎡, 톤)		유통판매실적(톤, 백만원)		비고 (주관매처)
	재배면적	생산량	출하량	매출액	
사업후 1년차					
2년차(년)					
3년차(년)					
4년차(년)					
5년차(년)					

※ 뒷면에 매년 현장 사진 첨부